

영유아권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Percep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Regards to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이영애, 광정인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Young-Ae Lee(young114@dreamwiz.com), Jung-In Kwak(junginkwak@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의 중요성 및 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도의 3년제 전문대학 6곳의 유아교육과 1, 2, 3학년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권리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권리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 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1, 2학년보다 3학년이 영유아의 권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권리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 보다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영유아권리 | 예비유아교사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rights. The survey covered 525 students attending six three-year-course colleges in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Chonra-do, Gyeongsang-do, and Jeju-do, Korea. They were in their freshmen, sophomore, and junior year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rstly, the research found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towards the importance children's rights was relatively high. The higher grade they were, the better perception for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they had. Additionally, the teachers who were registered for courses related to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well. Secondl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ighl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Compared to the freshmen and sophomores, the juniors had higher awareness levels about the necess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ights. On the other hand, being in a related course or not made no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for the necess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ights. Lastly,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had greater concern for the necessity of education rights rather than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 keyword : | Regard to Rights of Young Children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

I.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가치있는 권리의 주체자이며, 그들은 권리증진을 위해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 또한 어른들이 이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은 자신들도 권리가 있음을 배워야 하고, 어른과 교사는 이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49].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분야에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가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발표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20][21].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조약으로서, 1990년 9월 2일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된 협약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협약 비준 이후 정부는 협약이행을 위해 제도적·행정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체벌, 열악한 급식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 한번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유아교사로 성장하게 되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들은 예비교사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각 개인의 개인적 경험과 대학에서의 경험은 예비유아교사가 어떤 유아교사가 되는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11][36]. 즉,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학습한 경험이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주체자로서의 영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생긴다. 예비유아교

사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면[44] 교육현장에 나아가 영유아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권리를 지켜주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제협약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그 후 아동의 권리문제가 교육의 과제로 나타나면서 권리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99년 즈음부터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들[4][17][20]과 아동권리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들[28][37][39][47]이 있다. 이 연구들은 아동권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와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권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원인을 교사의 자질로 지적하였다. 이는 영유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영유아권리존중을 조성하여 상호작용하는 교사에게 달렸음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영유아권리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야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영유아권리를 존중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의 개념이나 윤리가 유아교사에게 어떻게 발달될 수 있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 즉 실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유아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진숙, 서영숙, 서혜경[8]은 예비유아교사 2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영유아권리 관련교과목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 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권리 관련교과목에서 영유아권리교육을 실시한 후 영유아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향상시켰으며,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은하, 고은

경[31]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의 경험과 접목시키는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에서 유아교사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신념이 명확해진다고 하였고, 백상수[14]는 실습을 다녀온 예비유아특수교사 20명을 다섯 포커스 그룹으로 나눠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아동중심수업을 꼽았다. 박은미[11]는 훌륭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척도로 교직관을 강조하며, 예비유아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교직관을 연구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직관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를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교직과목의 수가 많아지므로 교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사료했다. 그러므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유아권리관련 교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실습의 유무가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습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척도인 학년별로, 그리고 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전공교과목인 영유아권리 관련수강여부별로 영유아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영유아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러한 지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의 권리가 교육현장에서 보장되기 위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예비유아교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내용 중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것은 예비유아교사의 학년별, 영유아권리 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2.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것은 예비유아교사의 학년별, 영유아권리 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영유아권리의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역사적으로 서양에서의 영유아권리*는 대략 세 개의 시기로 발전하였는데, 고대로부터 19세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기로 때로는 부모가 영유아의 생사여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기이다[20]. 이 때 영유아들은 태어나면서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고, 따라서 영유아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9세기에 들면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인식하여 부모의 보호나 감독이 결여된 아동의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근거로 이루어진 것의 예로 아동학대 금지, 아동노동금지, 의무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지나친 감독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권 의식의 발전으로 영유아를 보호와 제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이러한 생애초기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 바로 이 점이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영유아교사와 원장 및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목표가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권리는 1920년대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의 등장으로 권리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어린이날과 어린이 현장제정,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이 되면서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권리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6].

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20]. 특히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토의와 검토를 거쳐 2005년 9월 ‘초기 유년기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일관성’[46]을 발표하였다. 이 논평에서는 나라마다 취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상의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는 0세부터 만5세를 보육·교육하는 예비유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영유아’라고 칭하고자 하며, 0-5세 아동의 권리를 ‘영유아권리’로 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학연령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출생이후 8세까지를 유아기로 정의하고, 출생에서 영아기, 취학 이전 기간과 취학 이행기까지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 논평은 영유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권리행사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자로 간주하여, 영유아기의 발달특성과 상황에 주목하여 다양성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권리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를 중요한 권리로 명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권리문서가 되었다[23]. 생존권은 아동의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보호권은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아동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을 다루는 권리이며, 참여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행사의 주체자가 되어 여러 가지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4가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즉,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15],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이 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안전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또한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평가'를 시작한 것은 기본권 보장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교사에게 영유아 권리준중 지침서를 제시하여 영유아 권리준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했으며, 특히, 한국보육시설 연합회와 육아정책연구소[43]에서는 보육시설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강령과 윤리선언문을

작성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가 가지는 힘이 실제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소유자인 영유아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교육을 통하여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권리의 존중자인 유아교사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하여 개발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권리교육을 통한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며[21], 아동권리협약 제41조에서도 '권리는 배우는 것 그 자체가 권리이다'라는 규정을 통해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의 취지나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둘러싼 성인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성인과 관계를 맺는 영유아의 권리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8].

영유아의 권리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얼마나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유아교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9]. 이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지지해 줄 사람, 그리고 영유아에게 권리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 또한 유아교사이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유아교사로서 기술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갖는 영유아권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술함양의 경험은 향후 유아교사가 되어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직이론, 교직소양, 전공과목의 확대로 말미암아 영유아권리에 대한 방향과 목적,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소재한 3년제 전문대학교 6곳의 유아교육과 1, 2, 3학년 학생 7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한 611명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없는 86부를 제외한 525명의 질문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들의 학년과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내용	인원수(%)	계(%)
학년	1학년	175(33.3)	525(100.0)
	2학년	163(31.0)	
	3학년	187(35.6)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	수강함	238(45.3)	525(100.0)
	수강하지 않음	287(54.7)	

표 2. 권리척도의 구성 및 문항내용

범주	권리유형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생존권	정신건강 서비스	어쩔 줄 모를 때나 기분이 언짢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9
	의료지원 및 서비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자랄 권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생활수준 유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사생활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나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경제적 권리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있는 것	
	양육제공의 권리 공부할 장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공부할 장소를 갖는 것	
보호권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부모 모두와 함께 살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9
	법정대리인(후견인)	나를 보살펴주고 필요하면 내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 주는 것	
	차별방지	나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전쟁 비침가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권리보장	내 권리를 책임 있는 사람이 존중해주는 것	
	유해한 노동 금지	위험하거나 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심리적 보호	나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신체적 보호	내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발달권	정보 제공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	12
	여가 및 놀이향유권	놀이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능력 및 자질 개발권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	
	교육받을 권리	내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성명(이름)권	태어나서 내 이름을 갖는 것	
	사회정의(양심) 교육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갖는 것	
	종교 선택의 자유권	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책임있는 성인의 관심과 지도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리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많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때가 되어 내가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	
	교육적 원조 및 제공	내가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2. 연구도구

영유아의 권리도구는 1993년 Hart와 Zeidn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를 통해 개발된 문항을 기초로 개발한 이재연, 강성희 [32]의 질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의 내적 신뢰도는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Cronbach’s α는 각각 .96, .95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각각 40문항씩 모두 80문항이며, 두 하위 영역의 질문번호와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따른 권리유형구분과 문항내용 및 문항수는 [표 2]와 같다.

참여권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는 것	10
	아동의 의사반영	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의사존중의 권리	나와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나를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 기회를 갖는 것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스스로 마음먹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시민적 자유권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존중해 주는 나만의 생각, 의견을 갖는 것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애정표현의 권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 것	40	
전체 문항수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먼저, 4점 척도로 제작된 질문지를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이 모호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조사에서 검증된 질문지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도에 소재한 3년제 전문대학 6곳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주간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총 7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61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611부 중 부실 기재된 8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5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유아권리 중요도와 교육 필요성 인식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학년에 따른 유아권리 중요도 인식 및 교육 필요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유아권리 중요도 인식 및 교육 필요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영유아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권리의 중요성 전체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3.12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 1학년(M=2.94, SD=.56), 2학년(M=3.14, SD=.50), 3학년(M=3.29, SD=.43)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권리의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예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권리항목은 그 중요도 순으로 1.유해한 노동금지(보호권, M=3.67), 2.의료지원 및 서비스(생존권, M=3.42), 3. 신체적 보호(보호권, M=3.39), 4. 건강하게 자랄 권리(생존권, M=3.38), 5. 양육제공의 권리(생존권, M=3.37), 6. 부모로부터 비분리(보호권, M=3.28), 7. 차별방지(보호권, M=3.27)·애정표현의 권리(참여권, M=3.27)로 나타났다. 중요도 인식 상위 20% 내에 드는 권리 항목은 각 학년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특별히 다른 항목을 든 경우를 살펴보면, 1학년은 여가 및 놀이향유권(발달권, M=3.17)과 다른 사람과의 교섭(참여권, M=3.09)을, 2학년은 사회정의(양심) 교육권(발달권, M=3.29)과 애정표현의 권리(참여권, M=3.26)를, 3학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교섭(참여권, M=3.45)과 애정표현의 권리(참여권, M=3.45)가 포함되었다. 학년에 따라 중요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발달권과 참여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었다. 또한 권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수강한 경우는 여가 및 놀이향유권(발달권, M=3.43)과 사회정의(양심) 교육권(발달권, M=3.35)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재해로부터 즉각적인 구제(생존권, M=3.24)가 포함되어 권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체 40문항 중 전체 유아교사가 비교적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하위 20%에 속하는 권리 항목을 가장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서비스(생

표 3.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N=525

범주	권리항목	전체	학년			F	권리 관련과목		t-값
			1학년	2학년	3학년		수강합	수강안함	
생존권	정신간경 서비스	2.61(.79) 하1	2.45(.79) 하1	2.68(.79) 하1	2.70(.78) 하1	5.62**	2.68(.80) 하1	2.55(.78) 하1	1.82
	의료지원 및 서비스	3.42(.67) 상2	3.22(.72) 상2	3.41(.63) 상2	3.61(.57) 상3	16.73***	3.55(.70) 상2	3.31(.70) 상2	4.13***
	건강하게 자랄 권리	3.38(.68) 상4	3.21(.70) 상3	3.34(.71) 상3	3.57(.59) 상5	13.29***	3.47(.67) 상5	3.30(.68) 상4	3.01**
	생활수준 유지	3.22(.75)	2.99(.74)	3.23(.75)	3.42(.71)	15.50***	3.34(.76)	3.11(.74)	3.45***
	자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3.14(.81)	2.95(.84)	3.10(.84)	3.36(.70)	12.74***	3.24(.79)	3.24(.79) 상6	2.46*
	사생활권	2.92(.75) 하6	2.73(.80) 하5	2.98(.68) 하8	3.05(.73) 하7	8.91***	2.99(.72) 하7	2.86(.78) 하6	1.99*
	경제적 권리	2.81(.80) 하3	2.59(.80) 하3	2.93(.76) 하5	2.91(.81) 하2	9.92***	2.86(.81) 하3	2.77(.80) 하4	1.30
	양육제공의 권리	3.37(.71) 상5	3.20(.72) 상4	3.32(.75) 상4	3.58(.59) 상4	14.30***	3.50(.66) 상3	3.27(.73) 상5	3.73***
	공부할 장소	2.92(.80) 하6	2.81(.81)	2.96(.76) 하7	2.99(.82) 하6	2.66	2.93(.81) 하4	2.92(.79)	.23
	소 계	3.09(.56)	2.92(.61)	3.12(.53)	3.24(.49)	22.70***	3.17(.46)	3.02(.52)	3.63**
보호권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3.28(.72) 상6	3.06(.76)	3.31(.69) 상5	3.45(.64) 상7	14.56***	3.39(.66) 상7	3.18(.75)	3.24*
	법정대리인(후견인)	3.12(.71)	2.91(.73)	3.12(.70)	3.32(.65)	15.60***	3.24(.70)	3.02(.71)	3.54***
	사법문예에서의 처우	3.14(.74)	2.88(.75)	3.18(.71)	3.35(.68)	20.26***	3.32(.70)	3.00(.74)	4.97***
	차별금지	3.27(.76) 상7	3.10(.77) 상7	3.25(.79)	3.46(.69) 상6	10.79	3.35(.75) 상8	3.21(.77) 상7	2.09*
	전쟁 비참가권	2.78(.92) 하2	2.58(.91) 하2	2.82(.86) 하2	2.94(.96) 하4	7.41***	2.82(.95) 하2	2.75(.90) 하2	.92
	권리보장	3.10(.78)	2.87(.86)	3.10(.73)	3.30(.69)	14.50***	3.19(.72)	3.01(.82)	2.64**
	유해한 노동금지	3.67(.57) 상1	3.57(.60) 상1	3.67(.56) 상1	3.76(.53) 상1	5.05**	3.71(.55) 상1	3.63(.58) 상1	1.53
	심리적 보호	3.25(.76)	3.04(.79)	3.27(.77)	3.43(.66)	12.47***	3.32(.74)	3.19(.77)	1.93
	신체적 보호	3.39(.71) 상3	3.18(.79) 상5	3.31(.72) 상5	3.66(.52) 상2	24.28***	3.50(.67) 상3	3.31(.73) 상2	3.14**
	소 계	3.17(.55)	3.00(.59)	3.12(.53)	3.37(.44)	27.53***	3.27(.50)	3.09(.57)	3.63**
개인발달권	정보 제공권	2.86(.77) 하5	2.73(.75) 하5	2.94(.79) 하6	2.92(.76) 하3	4.24*	2.93(.77) 하4	2.81(.77) 하5	1.78
	여가 및 놀이향유권	3.09(.74)	3.17(.69) 상6	3.09(.71)	3.27(.68)	12.38***	3.43(.68) 상6	3.15(.74)	3.04*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3.24(.74)	3.07(.77)	3.21(.73)	3.42(.67)	10.38***	3.32(.72)	3.17(.74)	2.39*
	능력 및 자질 개발권	3.15(.75)	2.98(.78)	3.20(.75)	3.28(.69)	7.62***	3.21(.72)	3.11(.77)	1.56
	교육받을 권리	3.10(.77)	2.92(.81)	3.13(.76)	3.25(.73)	8.41***	3.18(.74)	3.18(.74)	2.27
	성명이름권	3.08(.89)	2.87(.96)	3.13(.82)	3.22(.84)	7.89***	3.18(.86)	2.99(.91)	2.37*
	사회정의(양심) 교육권	3.25(.73)	3.05(.79)	3.29(.71) 상7	3.41(.64)	11.45***	3.35(.71) 상8	3.17(.74)	2.80**
	종교 선택의 자유권	2.92(.89) 하6	2.73(.91) 하5	2.91(.86) 하4	3.10(.85) 하8	8.14***	2.97(.88) 하6	2.87(.89) 하7	1.18
	책임있는 상인의 관심과 지도	3.19(.76)	3.02(.82)	3.17(.67)	3.35(.74)	8.80***	3.22(.75)	3.16(.77)	.99
	책임있는 상인기 교육권리	3.07(.82)	2.91(.86)	3.13(.79)	3.16(.80)	4.76**	3.11(.79)	3.03(.84)	1.03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2.82(.87) 하4	2.61(.86) 하4	2.87(.80) 하3	2.97(.90) 하5	8.53***	2.89(.89)	2.76(.85) 하3	1.77	
교육적 원조 및 제공	3.10(.77)	2.93(.81)	3.13(.77)	3.24(.72)	7.82***	3.13(.78)	3.08(.77)	.85	
소 계	3.09(.56)	2.92(.61)	3.12(.53)	3.24(.49)	15.90***	3.16(.52)	3.04(.59)	2.56**	
참여권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3.23(.72)	3.09(.73) 상8	3.21(.72)	3.37(.68)	6.99**	3.29(.72)	3.17(.71)	1.92
	이동의 의사표현	3.19(.72)	3.03(.77)	3.13(.72)	3.39(.62)	12.30***	3.26(.70)	3.13(.73)	2.22
	의사존중의 권리	3.17(.71)	3.04(.76)	3.19(.68)	3.26(.68)	4.58**	3.24(.70)	3.11(.72)	2.04*
	니를 향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3.24(.73)	3.07(.79)	3.18(.70)	3.45(.65) 상7	13.36***	3.34(.71)	3.15(.74)	3.00**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3.09(.74)	2.91(.79)	3.09(.71)	3.27(.68)	11.41***	3.13(.71)	3.07(.76)	.92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2.98(.80)	2.73(.83) 하5	3.04(.74)	3.18(.75)	16.25***	3.09(.76)	2.90(.81) 하8	2.84**
	사민적 자유권	3.17(.73)	3.01(.76)	3.23(.72)	3.27(.68)	6.97**	3.26(.70)	3.09(.74)	2.62**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3.20(.79)	3.02(.83)	3.13(.77)	3.43(.70)	14.16***	3.30(.77)	3.12(.79)	2.57**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2.99(.80)	2.79(.82)	3.03(.73)	3.14(.79)	9.08***	3.05(.79) 하8	2.94(.80)	1.47
	애정표현의 권리	3.27(.75) 상7	3.08(.78)	3.26(.77) 상8	3.45(.65) 상7	11.92***	3.34(.73)	3.21(.76)	2.02*
소 계	3.15(.55)	2.98(.59)	3.15(.52)	3.32(.49)	18.92***	3.23(.52)	3.09(.57)	2.94*	
전 체	3.12(.51)	2.94(.56)	3.14(.50)	3.29(.43)	22.64***	3.20(.47)	3.06(.54)	3.28***	

*p<.05, **p<.01, ***p<.001

* 상1-8: 권리 중요성 인식 상위 20%에 속하는 순위임/ 하1-8: 권리 중요성 인식 하위 20%에 속하는 순위임.

존권, M=2.61), 전쟁 비참가권(보호권, M=2.78), 경제적 권리(생존권, M=2.81), 부모로부터의 독립권(발달권, M=2.82), 정보 제공권(발달권, M=2.86), 사생활권(생존권, M=2.92) · 공부할 장소(생존권, M=2.92) · 종교 선택의 자유권(발달권, M=2.92)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인식 하위 20%에 속하는 항목은 각 학년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학년의 경우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참여권, M=2.73)이 포함되었다. 또한 권리 관련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참여권, M=3.05)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참여권,

M=2.90)이 포함되었다.

영유아권리 범주별 영유아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은 보호권(M=3.17, SD=.55), 참여권(M=3.15, SD=.55), 생존권과 발달권(M=3.09, SD=.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아권리 전체(F=22.6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생존권(F=22.70, p<.001), 보호권(F=27.53, p<.001), 발달권(F=15.90, p<.001), 참여권(F=18.92,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생존권에 해당하는 ‘공부할 장소(F=2.66, p<.05)’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수강한 경우(M=3.20, SD=.47), 수강하지 않은 경우(M=3.06, SD=.5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28, p<.001).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생존권(t=3.63, p<.001), 보호권(t=3.63, p<.01), 발달권(t=2.56, p<.01), 참여권(t=2.94, p<.0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위범주별 문항을 살펴보면, 생존권에서 의료지원 및 서비스(t=4.13, p<.001), 건강하게 자랄 권리(t=3.01, p<.01), 생활수준 유지(t=3.45, p<.001),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t=2.46, p<.01), 사생활권(t=1.99, p<.05), 양육제공의 권리(t=3.73, p<.001)가, 보호권에서 부모로부터의 비분리(t=3.24, p<.01), 법정대리인(후견인)(t=3.54, p<.001), 사법문제에서의 처우(t=4.97,

p<.001), 차별방지(t=2.09, p<.05), 권리보장(t=2.64, p<.01), 심리적 보호(t=1.93, p<.05), 신체적 보호(t=3.14,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발달권에서 여가 및 놀이향유권(t=3.04, p<.01),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t=2.39, p<.05), 교육받을 권리(t=2.27, p<.05), 성명(이름)권(t=2.37, p<.05), 사회정의(양심) 교육권(t=2.80, p<.01)에서, 참여권에서 아동의 의사반영(t=2.22, p<.05), 의사존중의 권리(t=2.04, p<.05),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t=3.00, p<.01),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t=2.84, p<.01), 시민적 자유권(t=2.62, p<.01),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t=2.57, p<.01), 애정표현의 권리(t=2.0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영유아의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권리교육의 필요성 전체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3.58로 나타나, 최고점이 4점임을 감안할 때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 1학년(M=3.54, SD=.32), 2학년(M=3.54, SD=.39), 3학년(M=3.66, SD=.30)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권리항목은 그 중요도 순으로 살펴보면, 1. 건강하게 자랄 권리(생존권, M=3.67), 2. 의료지원 및 서비스(생존권, M=3.80) · 양육제공의 권리(생존권, M=3.80), 4. 신체적 보호(보호권, M=3.78), 5.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생존권, M=3.76), 6. 차별방지(보호권, M=3.75), 7. 심리

표 4.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N=525

범주	권리유형	전체	학년			F	수강여부		t-값
			1학년	2학년	3학년		수강함	수강안함	
생존권	정신건강 서비스	3.32(.58) 하5	3.31(.55) 하5	3.24(.59) 하4	3.39(.61) 하5	2.96*	3.31(.59) 하6	3.32(.58) 하3	-.26
	의료지원 및 서비스	3.80(.46) 상2	3.76(.45) 상4	3.73(.56) 상3	3.89(.33) 상2	6.14**	3.83(.44) 상2	3.77(.47) 상4	1.44
	건강하게 자랄 권리	3.84(.40) 상1	3.82(.41) 상1	3.77(.49) 상2	3.91(.29) 상1	5.23**	3.87(.35) 상1	3.81(.44) 상1	1.64
	생활수준 유지	3.65(.55)	3.55(.58)	3.64(.57)	3.76(.50)	6.41**	3.68(.55)	3.63(.56)	1.03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3.71(.50)	3.70(.50)	3.63(.56)	3.79(.42) 상8	4.65*	3.72(.50) 상7	3.70(.49)	.60
	사생활권	3.42(.62) 하7	3.37(.62) 하6	3.44(.61)	3.44(.63) 하7	.84	3.42(.65) 하7	3.41(.60) 하7	.17
	경제적 권리	3.07(.74) 하1	2.89(.72) 하1	3.17(.75) 하1	3.16(.72) 하1	8.21***	3.08(.75) 하1	3.07(.74) 하1	.16
	양육제공의 권리	3.80(.43) 상2	3.73(.48) 상6	3.78(.43) 상1	3.88(.35) 상4	5.64**	3.79(.43) 상3	3.80(.42) 상2	-.40
	공부할 장소	3.31(.72) 하4	3.24(.73) 하4	3.34(.71) 하6	3.35(.71) 하3	1.28	3.30(.72) 하5	3.32(.71) 하3	-.35
	소 계	3.55(.33)	3.49(.31)	3.53(.37)	3.62(.30)	7.55***	3.56(.34)	3.54(.32)	.63

보 호 권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3.71(.52)	3.69(.50) 상7	3.67(.57) 상7	3.77(.50)	1.93	3.74(.51)	3.69(.53)	.99
	법정대리인(후견인)	3.67(.55)	3.64(.58)	3.58(.61)	3.77(.43)	5.57**	3.71(.48)	3.64(.59)	1.43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3.51(.60)	3.43(.59)	3.44(.66)	3.65(.53)	7.70***	3.53(.63)	3.49(.58)	.66
	차별방지	3.75(.51) 상6	3.75(.51) 상5	3.67(.58) 상7	3.80(.44) 상7	2.78	3.73(.54)	3.76(.48) 상6	-.64
	전쟁 비참가권	3.27(.83) 하3	3.19(.83) 하3	3.23(.82) 하3	3.37(.85) 하4	2.32	3.28(.87) 하4	3.26(.80) 하5	.27
	권리보장	3.62(.57)	3.56(.60)	3.54(.63)	3.74(.48)	6.65***	3.62(.57)	3.62(.58)	.02
	유해한 노동 금지	3.67(.57)	3.57(.60)	3.67(.56) 상7	3.76(.53)	5.05**	3.71(.55)	3.63(.58)	1.53
	심리적 보호	3.73(.51) 상7	3.66(.53)	3.69(.55) 상5	3.82(.45) 상6	4.74**	3.72(.53)	3.73(.50) 상7	-.20
	신체적 보호	3.78(.46) 상4	3.77(.46) 상2	3.68(.55) 상6	3.89(.33) 상2	9.20***	3.79(.44) 상3	3.78(.48) 상3	.42
	소 계	3.63(.37)	3.59(.35)	3.58(.41)	3.73(.33)	10.08***	3.65(.37)	3.62(.37)	.77
발 달 권	정보 제공권	3.51(.60)	3.50(.58)	3.45(.61)	3.57(.60)	1.74	3.48(.62)	3.54(.58)	-1.02
	여가 및 놀이향유권	3.72(.49) 상8	3.65(.51)	3.71(.52) 상4	3.80(.43) 상7	4.78**	3.75(.47) 상5	3.70(.50)	1.19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3.76(.48) 상5	3.77(.46) 상2	3.66(.58)	3.83(.39) 상5	5.63**	3.75(.50) 상5	3.77(.47) 상4	-.44
	능력 및 자질 개발권	3.69(.51)	3.67(.51)	3.65(.55)	3.73(.48)	1.22	3.68(.52)	3.69(.51)	-.11
	교육받을 권리	3.60(.59)	3.55(.62)	3.57(.60)	3.68 (.54)	2.81	3.60(.59)	3.61(.59)	-.11
	성명(이름)권	3.55(.69)	3.48(.75)	3.52(.68)	3.65(.64)	3.16*	3.58(.68)	3.53(.71)	.70
	사회정의(양심) 교육권	3.68(.53)	3.66(.51)	3.63(.60)	3.76(.47)	3.15*	3.69(.55)	3.68(.51)	.38
	종교 선택의 자유권	3.32(.79) 하5	3.31(.77) 하5	3.25(.81) 하5	3.40(.78) 하6	1.61	3.27(.83) 하3	3.37(.74) 하6	-1.41
	책임있는 성인의 관심과 지도	3.62(.55)	3.60(.55)	3.50(.63)	3.74(.44)	8.80***	3.61(.55)	3.63(.55)	-.45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리	3.48(.68)	3.45(.69)	3.50(.68)	3.49(.66) 하8	.24	3.49(.67)	3.47(.68)	.23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3.21(.75) 하2	3.11(.73) 하2	3.21(.77) 하2	3.30(.72) 하2	2.81	3.22(.79) 하2	3.20(.71) 하2	.37
	교육적 원조 및 제공	3.50(.62)	3.44(.62)	3.48(.65)	3.56(.60)	1.81	3.50(.60)	3.49(.64)	.30
소 계	3.55(.39)	3.52(.38)	3.51(.43)	3.63(.36)	5.24**	3.55(.40)	3.56(.38)	-.09	
참 여 권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3.65(.52)	3.67(.49)	3.53(.59)	3.73(.46)	6.47**	3.66(.53)	3.64(.52)	.24
	아동의 의사반영	3.69(.52)	3.68(.52) 상8	3.64(.54)	3.74(.46)	1.75	3.67(.51)	3.71(.51)	-.79
	의사존중의 권리	3.66(.51)	3.65(.54)	3.63(.52)	3.70(.48)	.85	3.69(.49)	3.64(.53)	1.07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3.67(.52)	3.65(.50)	3.60(.57)	3.76(.47)	4.77**	3.69(.51)	3.65(.53)	.92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3.50(.61)	3.45(.63)	3.45(.64)	3.60(.55)	3.64*	3.51(.61)	3.50(.61)	.19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3.47(.65) 하8	3.38(.67) 하7	3.42(.70) 하7	3.59(.57)	5.77**	3.49(.66)	3.45(.65) 하8	.80
	시민적 자유권	3.55(.58)	3.54(.56)	3.55(.58)	3.56(.61)	.05	3.53(.60)	3.57(.57)	-.67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3.66(.52)	3.66(.50)	3.60(.58)	3.73(.48)	2.81	3.67(.55)	3.66(.50)	.30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3.46(.63)	3.41(.62) 하8	3.42(.63) 하7	3.53(.64)	2.02	3.44(.66) 하8	3.47(.61)	-.60
	애정표현의 권리	3.71(.51)	3.67(.51)	3.66(.56)	3.80(.44)	4.16	3.72(.48) 상7	3.71(.53) 상8	.25
소 계	3.60(.37)	3.57(.35)	3.55(.42)	3.67(.33)	5.80**	3.61(.37)	3.60(.37)	.24	
전 체	3.58(.34)	3.54(.32)	3.54(.39)	3.66(.30)	7.73***	3.58(.35)	3.58(.34)	.36	

*p<.05, **p<.01, ***p<.001

* 상1-8: 권리 중요성 인식 상위 20%에 속하는 순위임/ 하1-8: 권리 중요성 인식 하위 20%에 속하는 순위임.

적 보호(보호권, M=3.73), 8. 여가 및 놀이향유권(참여권, M=3.72)로 나타났다.

중요도 인식 상위 20% 내에 드는 권리 항목은 각 학년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특별히 다른 항목을 든 경우를 살펴보면, 1학년은 아동의 의사반영(참여권, M=3.68)이, 2학년은 유해한 노동금지(보호권, M=3.67)가, 3학년은 재해로부터 즉각적인 구제(생존권, M=3.79)가 포함되었다. 또한 권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수강한 경우는 재해로부터 즉각적인 구제(생존권, M=3.72)와 여가 및 놀이향유권(발달권, M=3.75)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차별방지(생존권, M=3.76)와 심리

적 보호(보호권, M=3.73)가 포함되어 권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체 40문항 중 전체 유아교사가 비교적 그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하위 20%에 속하는 권리 항목을 가장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1. 경제적 권리(생존권, M=3.07), 2. 부모로부터 독립권(발달권, M=3.21), 3. 전쟁 비참가권(보호권, M=3.27), 4. 공부할 장소(생존권, M=3.31), 5. 정신서비스(생존권, M=3.32)·종교선택의 자유권(발달권, M=3.32), 7. 사생활권(생존권, M=3.42) 8.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생존권, M=3.4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인식 하위 20%에 속하는 항

목은 각 학년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3학년의 경우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참여권, M=3.49)이 포함되었다.

영유아권리 범주별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은 보호권(M=3.63, SD=.37), 참여권(M=3.60, SD=.37), 생존권(M=3.55, SD=.33)과 발달권(M=3.55, SD=.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 전체(F=7.7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생존권(F=7.55, p<.001), 보호권(F=10.08, p<.001), 발달권(F=5.24, p<.01), 참여권(F=5.80,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별 문항을 살펴보면, 생존권에서 정신건강서비스(F=2.96, p<.05), 의료지원 및 서비스(F=6.14, p<.01), 건강하게 자랄 권리(F=5.23, p<.01), 생활수준 유지(F=6.41, p<.01),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F=4.65, p<.05), 경제적 권리(F=8.21, p<.001), 양육제공의 권리(F=5.64, p<.01)가, 보호권에서 법정대리인(후견인)(F=5.57, p<.01), 사법문제에서의 처우(F=7.70, p<.001), 권리보장(F=6.65, p<.001), 유해한 노동금지(F=5.05, p<.01), 심리적 보호(F=4.74, p<.01), 신체적 보호(F=9.2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발달권에서 여가 및

놀이향유권(F=4.78, p<.01),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F=5.63, p<.01), 성명(이름)권(F=3.16, p<.05), 사회정의(양심) 교육권(F=3.15, p<.01), 책임있는 성인의 관심과 지도(F=8.80, p<.001)에서, 참여권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섭(F=6.47, p<.01),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F=4.77, p<.01),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F=3.64, p<.05),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F=5.7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수강한 경우(M=3.61, SD=.37), 수강하지 않은 경우(M=3.60, SD=.3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24, p<.05). 또한 권리관련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영유아권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리 모든 하위범주와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권리 관련과목 수강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3. 영유아의 권리의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의 차이

영유아의 권리 중요성 보다 권리교육 필요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22.30, p>.001). 아동

표 5. 권리의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차이

N=525

범주	대응변수	평균(표준편차)	자유도	t-값
생존권	정신건강 서비스 중요성 인식 -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 필요성 인식	-.71(.86)	524	-19.02***
	의료지원 및 서비스 중요성 인식 - 의료지원 및 서비스 교육 필요성 인식	-.38(.72)	524	-12.05***
	건강하게 자랄 권리 중요성 인식 -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6(.67)	524	-15.72***
	생활수준 유지 중요성 인식 - 생활수준 유지 교육 필요성 인식	-.44(.75)	524	-13.27***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중요성 인식 -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제 교육 필요성 인식	-.56(.81)	524	-15.87***
	사생활권 중요성 인식 - 사생활권 교육 필요성 인식	-.50(.77)	524	-14.72***
	경제적 권리 중요성 인식 - 경제적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26(.83)	524	-7.27***
	양육제공의 권리 중요성 인식 - 양육제공의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3(.69)	524	-14.20***
	공부할 장소 중요성 인식 - 공부할 장소 교육 필요성 교육	-.39(.81)	524	-10.99***
소개	생존권 중요성 인식 - 생존권 교육 필요성 인식	-.46(.48)	524	-21.74***
보호권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중요성 인식 -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교육 필요성 인식	-.43(.72)	524	-13.79***
	법정대리인(후견인) 중요성 인식 - 법정대리인(후견인) 교육 필요성 인식	-.55(.73)	524	-17.32***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중요성 인식 -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교육 필요성 인식	-.37(.74)	524	-11.36***
	차별방지 중요성 인식 - 차별방지 교육 필요성 인식	-.47(.77)	524	-14.11***
	전쟁 비참가권 중요성 인식 - 전쟁 비참가권 교육 필요성 인식	-.48(.94)	524	-11.74***
	권리보장 중요성 인식 - 권리보장 교육 필요성 인식	-.55(.91)	524	-13.88***
	유해한 노동 금지 중요성 인식 - 유해한 노동 금지 교육 필요성 인식	-.46(.78)	524	-13.59***
	심리적 보호 중요성 인식 - 심리적 보호 교육 필요성 인식	-.48(.75)	524	-14.60***
	신체적 보호 중요성 인식 - 신체적 보호 교육 필요성 인식	-.39(.68)	524	-13.25***
소개	보호권 중요성 인식 - 보호권 교육 필요성 인식	-.46(.50)	524	-21.28***

발달권	정보 제공권 중요성 인식-정보 제공권 교육 필요성 인식	-65(.81)	524	-18.49***
	여가 및 놀이향유권 중요성 인식 - 여가 및 놀이향유권 교육 필요성 인식	-39(.66)	524	-13.42***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중요성 인식 -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교육 필요성 인식	-41(.75)	524	-12.47***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중요성 인식 -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교육 필요성 인식	-67(.79)	524	-19.22***
	능력 및 자질 개발권 중요성 인식 - 능력 및 자질 개발권 교육 필요성 인식	-53(.77)	524	-15.92***
	교육받을 권리 중요성 인식 - 교육받을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50(.76)	524	-15.10***
	성명(이름)권 중요성 인식 - 성명(이름)권 교육 필요성 인식	-48(.78)	524	-13.94***
	사회정의(양심) 교육권 중요성 인식 - 사회정의(양심) 교육권 교육 필요성 인식	-43(.70)	524	-14.15***
	종교 선택의 자유권 중요성 인식 - 종교 선택의 자유권 교육 필요성 인식	-41(.84)	524	-11.05***
	책임있는 성인의 관심과 지도 중요성 인식 - 책임있는 성인의 관심과 지도 교육 필요성 인식	-43(.75)	524	-13.26***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리 중요성 인식 -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1(.85)	524	-11.05***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중요성 인식 -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교육 필요성 인식	-39(.88)	524	-10.99***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중요성 인식 - 교육적 원조 및 제공 교육 필요성 인식	-39(.79)	524	-11.41***
소개	발달권 중요성 인식 - 발달권 교육 필요성 인식	-46(.51)	524	-20.72***
참여권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중요성 인식 -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교육 필요성 인식	-42(.71)	524	-13.54***
	아동의 의사반영 중요성 인식 - 아동의 의사반영 교육 필요성 인식	-50(.72)	524	-16.01***
	의사존중의 권리 중요성 인식 - 의사존중의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50(.74)	524	-15.49***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중요성 인식 -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교육 필요성 인식	-43(.71)	524	-13.93***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중요성 인식 -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교육 필요성 인식	-48(.83)	524	-13.34***
	시민적 자유권 중요성 인식 - 시민적 자유권 교육 필요성 인식	-38(.75)	524	-11.67***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중요성 인식 -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6(.75)	524	-14.10***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중요성 인식 -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교육 필요성 인식	-47(.82)	524	-13.02***
소개	애정표현의 권리 중요성 인식 - 애정표현의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4(.71)	524	-14.28***
	참여권 중요성 인식 - 참여권 교육 필요성 인식	-45(.51)	524	-20.34***
전체	권리 중요성 인식 - 권리 교육 필요성 인식	-46(.47)	524	-22.30***

***p<.001

권리, 즉 생존권($t=-21.74, p>.001$), 보호권($t=-21.28, p>.001$), 발달권($t=-20.72, p>.001$), 참여권($t=-20.34, p>.001$) 모두에서 권리 중요성 인식보다 권리교육 필요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모든 문항은 유의도 $p>.001$ 수준에서 권리 중요성 인식보다 권리교육 필요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을 의미있게,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신장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 525명에게 영유아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또 영유아들에게 실제 그러한 권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권리범주별로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보호권과 참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권과 발달권을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직유아교사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즉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10][27][34]과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 안소영, 한지숙[3]의 연구에서 영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비해 발달권과 참여권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유아들은 덜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유아의 보호와 참여적 측면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발달권에 대한 강조를 높여야 하는 대목이다. 발달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기숙[25]의 연구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 84%가 학습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나친 학습경험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3, 4차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42]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의 1, 2차 보고서에 이어 3, 4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한국의 입시조기교육이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동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교육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5].

구체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전체점수는 4점 평정 중 3.12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권리를 보통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개의 권리항목 중에서 30개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비록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영유아권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신지현[19]과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24]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이 영유아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으로 보인다[7].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권리항목은 유해한 노동금지, 의료지원 및 서비스, 신체적 보호, 건강하게 자랄 권리, 양육제공의 권리,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차별방지, 애정표현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상 부모로부터 양육과 신체적인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38] 자라야 한다는 비교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성장에 대한 통념과도 일치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낮게 인지하고 있는 권리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쟁 비참가권, 경제적 권리,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정보 제공권, 종교선택의 자유권, 생활권, 공부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사회에 비해 비교적 부모와의 결합의 시기가 길고, 어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특성[29]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영유아의 권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지각에 있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학년과 권리관련 수강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권리의 중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고, 권리관련 과목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수강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보다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 및 교직 교과목의 수강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아와 유아교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11],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진 후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에 대한 반성적 사고능력, 특히 교육실습의 유무[41]가 두 집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모두 최상위로 중요하게 인식한 권리 문항은 영유아에게 해를 끼치는 노동을 금지해야 하는 권리였으며, 상대적으로 최하위로 낮게 인식한 권리 문항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들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피로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생소하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연, 강성희[32]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의 보유인식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이 생소하며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내용을 권리범주별로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보호권과 참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권과 발달권을 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첫번째 결과와 같은 인식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권리의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같은 크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에게 권리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각하는 필요성 점수는 4점 평정 중 3.58로 중요성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권리교육을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개의 권리항목 중에서 30개 항목에서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들에게 권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권리항목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 의료지원 및 서비스, 양육제공의 권리, 신체적 보호,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방지, 심리적 보호, 여가 및 놀이향유권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의 항목(건강하게 자랄 권리, 의료지원 및 서비스, 양육제공의 권리, 신체적 보호, 차별방지)은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부모 대신에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돌보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양육과 돌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22][26]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낮게 인지하고 있는 권리는 경제적 권리,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전쟁 비참가권, 공부할 장소, 정신건강서비스, 종교선택의 자유권, 사생활권,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을 제외한 7개의 항목은 권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모두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리의 항목에 관한 생각의 여지를 제공해준다.

발달단계상 영유아의 권리는 보호와 자율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의 특성이 있어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영유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갖지만 동시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34]. 유해미 외[24]는 영유아의 권리는 권리범주와 발달 및 연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생존권과 보호권은 교사에 의한 보호에, 발달권과 참여권은 영유아의 자율성에 보다 비중을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안동현[20]은 포괄적인 영유아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교육현장의 교직원 및 원장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범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유아의 권리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영유아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누리과정의 목적[1]과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유아가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표준보육과정의 목적[16]에 따라 영유아권리의 방향과 권리교육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권리교육 내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되,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

권과 참여권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구성할 수 있는[24]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유아교육현장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권리교육 연수를 통하여 영유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영유아 권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영유아들에게 권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지각에 있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권리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 2학년보다 3학년이 영유아의 권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학년은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을 모두 경험한 학년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교사로서의 역할과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신념을 실습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만들어간다는 여러 연구들[14][31][41]을 비추어 볼 때, 대학에서 1, 2학년 동안 배운 이론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접목시키는 실습은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3년 동안의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으로 교수의 수업 이외에도 다른 활동을 통해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35].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사전실습, 본실습, 사후실습 등 실습을 되도록 많이 하여 영유아권리교육을 하는데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실습관련 교육과정 확대와 실질적인 내실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교육의 중요성보다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영유아권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권리존중 태도가 중요함을 지적했던 선행연구들[8][13]과 견주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권리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에게 '어떻게 활동을 잘 할 것인가?'라는 실제

적 접근 이전에 교사 자신이 영유아의 존재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영유아권리와 관련된 경험과 연수가 부족할 때, 영유아권리 자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4][17][27]. 그러나 사실 영유아권리 관련 현직교육이 다채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7]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직접 경험해보고 중요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예비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습득을 하게 한 후, 프로젝트 접근법에 따른 영유아권리교육의 모의수업을 되도록 많이 실시하여 바람직한 영유아권리의 중요성과 교육내용을 확립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직에 있는 좋은 교사들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영유아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 경험과 느낌을 전달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실제 교육현장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영유아권리의 문제상황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전략을 구상해보므로써 실천적 지식과 반성적 사고능력이 있는 예비유아교사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언

이제 권리실천의 관점에서 예비유아교사가 추후 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 역량이 강화되기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능력과 관점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해야만 한다. 여전히 보호받는 존재로서 영유아를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는 영유아를 권리에 대한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기 [50]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유아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며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개념화 [45]해 온 것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필요로 한다. 즉 영유아는 자신들의 사회적 세계를 생산하기 위해 능력있고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 [48]하며, 유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자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는 유아를 단순히 성인이 제공하는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존재로 보기 보다는 사회질서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유아교육 현장으로 나아갈 예비유아교사를 지원하는 유아교사교육의 변화를 수반해야만 한다. 직전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실천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예비유아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떻게'라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어떻게'라는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면 '아하~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하~ 이렇게 하면 안되지구나'하는 수준으로만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 어떻게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추구할 만한지, 어떤 교육적인 조건과 제반 지원이 권리의 가치와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영유아와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로 '동반자적 관계 [30]' 혹은 '함께 존재하는 관계 [40]'인가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실천이 순환되어 실천적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관심, 계획, 목표, 능력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영유아를 보호와 제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생애초기 경험을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후 유아교사로서 영유아 권리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영유아는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권리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 부, 2013.
-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2.
- [3] 김경희, 안소영, 한지숙,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연구”, *아동과 권리*, 제17권, 제2호, pp.175-204, 2013.
- [4] 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유아교육학* 논집, 제12권, 제4호, pp.299-323, 2008.
- [5] 김승권, 강민지, 이지영, 이성범, 송민정,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 [6] 김윤정,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7] 김진숙,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준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8] 김진숙, 서영숙, 서혜정, “아동권리교육이 예비 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 논집, 제14권, 제6호, pp.35-60, 2010.
- [9] 나 정, *현 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방향-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 [10] 류수정,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박은미, “예비 유아교사들의 교직관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pp.71-89, 2008.
- [12] 박은혜, *유아교사론*, 창지사, 2009.
- [13] 배송희, *유아권리 교육을 통한 보육교사의 성찰과 영유아의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4] 백상수, “교생실습 후 예비유아특수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과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제안”,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pp.103-128, 2011.
- [15]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2005.
- [16]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보건복지부, 2011.
- [17]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분석”, *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pp.215-232, 2009.
- [18]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유아에게 참여 기회를 주려는 교사의 노력과 그 경험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6호, pp.111-137, 2012.
- [19] 신지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0] 안동현, “아동과 보육교사의 권리”, 2010 추계 보육관련 학회 통합 학술대회, pp.141-148, 2010.
- [21] 양심영,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아동인권교육포럼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3.
- [22] 양옥승, “체계념론적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과정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2권, 제3호, pp.139-170, 2004.
- [2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5.
- [24]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1.
- [25] 이기숙,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2001.
- [26] 이미숙, “예비 유아교사와 예비 초등교사의 유아 교사 역할 인식”, *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63-80, 2007.
- [27] 이미숙,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이미숙, “아동의 인권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185-212, 2007.
- [29] 이배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1호, pp.35-46, 1997.
- [30] 이용교, 황옥경, 김영지, 김형욱, 이중섭, 박경희,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 복지, 2005.

[31] 이은하, 고은경,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이미지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6호, pp.145-177, 2008.

[32] 이재연, 강성희,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1호, pp.65-83, 1997.

[33]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제20권, 제6호, pp.153-165, 2009.

[34] 이지영, 영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5] 이혜경, 예비유아교사의 양성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6] 임은정, 이성균, 정미림, “동료 유아교사 평가척도 개발 및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pp.438-447, 2010.

[37] 정순원, 교사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8] 조복희,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2006.

[39] 주한수,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0] 쓰모리 마코토, 어린이와 함께 크는 교사(박향아 역), 중앙적성출판사, 2000.

[41] 차영숙, 강민정, 유희정,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육실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긍정적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3호, pp.369-394, 2011.

[42] 한국 NPO연대,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2010.

[43]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시설장 교사 윤리강령 개발 연구, 2010.

[44] J. Agee, “Readers becoming teachers of literature,”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29, No.3, pp.397-431, 1997.

[45] G. S. Connella,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유혜령 역), 창지사, 2002.

[46] General Comment No.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vember, 2005.

[47] S. N. Hart and M. Zeidner,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ion: Early findingd of a cross national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 Vol.1, pp.165-199, 1993.

[48] B. Mayall, *Towards a sociology for childhood: thinking from children’s lives*, Open University Press, 2002.

[49] B. A. Reardon, *Education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206-220, 1995.

[50] R. S. Steinberg and L. J. Kincheloe, *Kinderculture: the corporate construction of childhood*, second edition, Westview Press, 2004.

저 자 소 개

이 영 애(Young-Ae Lee)

정희원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사)
 - 1993년 8월 : 동대학원 유아교육 전공(문학석사)
 - 2009년 2월 : 동대학원 유아교육 전공(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과정, 놀이지도, 아동복지

곽 정 인(Jung-In Kwak)

정희원



- 1997년 2월 : 순천향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문학석사)
 - 2009년 2월 : 동대학원 유아교육 전공(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모교육, 유아건강교육, 실외놀이